

과태료 부과기준

< 일반기준(신설) >

가.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- 1)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2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- 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나.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. 다만,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- 1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- 2)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< 개별기준 >

위 반 행 위	해당법조문	과태료금액
1. 혈액원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혈액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	법 제6조의2제2항	150만 원
1의2. 헌혈자 및 그의 혈액검사에 관한 정보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	법 제8조제5항	150만 원
1의3. 수혈부작용 발생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	법 제 10조제1항	200만 원
2.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자	법 제 10조제2항	100만 원
3. 혈액관리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·기피 또는 방해한자	법 제 13조제1항	150만 원